성주군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18년 11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성주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상위 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불필요한 보조금 교부 취소 사유를 삭제하여 안정적인 사업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인용 조항 변경(안 제1조)

나. 상위 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보조금 교부 취소 사유 삭제(안 제12조)

-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규제심사 : 심사완료 (기획감사실-8015 (2018.10.11.))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 심사완료 (주민복지과-61644 (2018.11.06.))

마. 입법예고 : 의견없음. (2018. 10.19.~2018. 11.08.)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제6항”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으로,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를 “각급학교”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급학교”를 “성주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6조제2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및 제3호 중 “1인”을 각각 “1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3인”을 “3명”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당해연도”를 “해당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조금을”을 “군수는 보조금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거짓사실”을 “허위의 사실”로 한다.

제12조 제목 “(보조사업의 변경·취소)”를 “(보조사업의 변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 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 각급학교----------.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6. 기타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성주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
제3조(보조 기준액의 범위) 군수는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보조 기준액의 범위) ---------- 범위----------.
제4조(보조금의 신청) ① 각급 학교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별지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초・중등학교장은 경상북도 성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경유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장은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제4조(보조금의 신청) ① ----------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②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 제4조에 따른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 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법령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③ ---- 제1항에 따라 ---------- ----------.
제6조(위원회 설치 등) ① (생 략)	제6조(위원회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1명-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경상북도 성주교육지원청 업무담당 과장 1인	2. ---------- 1명
3. 관내 학교장 1인	3. --------- 1명
4. 학교교육과 운영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인사 3인	4. ---------- 3명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② (생 략)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업무 담당이 되며,서기는 교육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 1명----------.
제8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위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하였을 때	4. 그 밖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
1.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1. 해당연도 ----------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기타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하여 군수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

제11조(목적외 사용금지) ① (생 략)	제11조(목적외 사용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거짓사실이 발견된 때	4. 그 밖에 ---------- 허위의 사실---------
제12조(보조사업의 변경·취소) ① (생략)	제12조(보조사업의 변경)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수행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삭 제>